

	입학전형회피·배제제도운영에 관한 규정	규정번호	3-4-24
		제정일자	2020.09.01.
		개정일자	2024.01.01.
		개정차수	2차
		소관부서	입학홍보협력처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입학전형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회피·배제에 대한 기본 원칙과 운영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입학전형’이란 고등교육법 제34조의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을 말한다.
2. ‘입학전형 업무 참여자’란 입학사정관(위촉사정관 포함)을 포함하여 실기 및 면접고사, 대학 입학사정 업무관련자 등을 말한다.
3. ‘회피’란 응시생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자가 입학전형 업무에 참여하지 않기 위해 응시생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자진신고 하는 것을 말한다.
4. ‘배제’란 대학의 입학 관련 업무를 불공정하게 운영 또는 취급을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대학 자체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된 대상자를 입학전형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을 말한다.
5. ‘응시생과 특수한 관계’란 「고등교육법」 제34조의2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2와 본 규정 제3조에서 정하는 응시생과의 관계를 말한다.

제3조(대상) ① 대학 입학전형 회피 및 배제 대상 적용 범위는 출제, 평가, 감독, 관리 등에 관여하는 입학전형 업무 참여자로 한다.

② 회피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학전형 업무 참여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응시생과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77조)인 경우
2.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생을 그 학생의 입학연도가 개시되는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습하거나 과외 교습한 경우
3.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생을 그 학생의 입학연도가 개시되는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고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학교에서 교육한 경우
4. 그 밖에 입학전형 업무 참여자의 지인(학연, 지연, 종교, 직연 등 친분관계) 중에서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지원한 경우

③ 배제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자체시스템(연말정산, 인사현황, 가족장학사항 등) 및 서류검토를 통해 확인 가능한 입학전형 업무 참여자 및 배우자의 가족
2. 회피 자진신고를 받은 내용 중 사회통념상 공정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운영방법 및 시기) 회피·배제는 자진신고(회피), 시스템 검증(배제), 재검증, 사후검증의 절차로 이루어지며, 운영방법 및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진신고(회피) : 주무 부서는 입학전형 업무 참여자를 대상으로 입학전형이 실시되기 전, 원서접수 후 평가전, 평가진행 중 자진신고(회피) 사항을 안내하고, 응시생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입학전형 업무참여자는 자진신고 서류(신고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스템 검증(배제) : 주무 부서는 원서접수 이후 연말정산자료, 인사현황자료, 가족장학사항 등을 종합하여 입학전형 업무 참여자와 응시생과의 관련 여부를 확인 후 해당 입학전형 업

무에서 배제할 수 있다.

3. 재검증 : 입학전형 업무 참여자가 확정되기 이전에 주무 부서는 회피·배제 관련 자료를 비교 검토하고 응시생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교직원이 선발 업무에 참여하는 자가 있는지 검증하여야 한다.

4. 최종검증 : 해당 연도의 모든 입학전형 종료 후 합격자를 대상으로 대학의 인사현황자료, 가족장학 및 가족 수당 신청 내역을 확인하여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감사 등을 통해 입학관련 업무 참여자에 대한 최종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처리 관리) ① 주무 부서는 회피·배제와 관련된 처리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계획을 입학전형 실시 이전에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주무 부서는 매 학년도의 회피·배제 운영 결과를 자체 보관·관리하여 입학전형 관리의 공정성이 검증될 수 있도록 한다.

제6조(위반자 조치) 입학전형관리위원장은 교직원이 지원자의 합격에 부정하게 기여하거나 또는 회피·배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입학전형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저해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반자에 대한 후속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기타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 년 5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